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3. 9.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2023. 9.

운영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김정희 의원 외 7명(박왕규, 이진환, 고명옥, 박정환, 김장관, 박종길, 서민우)
- 발의일자: 2023. 9. 1.
- 회부일자: 2023. 9. 1.
- 검토기간: 2023. 9. 5. ~ 9. 7.

2. 제안이유

- 현재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열린 의회에 대해 운영 대상을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폭넓게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행 조례 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달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어린이·청소년의회 참여자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3. 9. 1. ~ 2023. 9. 1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의회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한 모의의회 체험을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그간 어린이 열린 의회는 2011년부터 코로나19로 미운영된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2회씩 운영하여 왔으며, 올해는 중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체험을 2회 운영하였음.
- 어린이·청소년으로 운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운영계획 수립,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미래세대인 어린이·청소년들이 의회 체험으로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 ·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생략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내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토론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습득케 함으로써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열린 의회(이하 “어린이 의회” 라 한다)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 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선정범위)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의회 참가 대상자를 관내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60명 이내로 선정한다.

제4조(선정 방법) 관내 초등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참가 대상자 중에서 구의회 의장이 선정한다.

제5조(개최 시기) 매년 동계·하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등) ① 구의회 의장은 매년 어린이의회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의회 변천사 등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교육에 관한 사항
2. 조례안 심의 등 지방 의회에서의 토론 문화 체험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참가자에 대한 지원 등)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의회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료증 수여
2. 배지·단복 등 지원
3. 선진지 견학 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평가) 구의회 의장은 매년 어린이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